



국세기본법 해설

- 납세의무의 성립 · 확장 · 소멸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국세기본법의 의의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법에서는 기간과 기한에 관한 사항, 서류의 송달 및 인격에 관한 사항,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세법적용과 과세행정에 관한 사항, 국세환급과 관련한 사항,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 · 확장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여타 내국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타세법이 우선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간과 기한

가. 기간의 계산

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이며,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하되,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나. 기한의 계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1)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2)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정전, 프로그램오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3)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통상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천재·지변등 기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통지·납부·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다.

- i) 납세자가 천재지변을 당한 때
- ii)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 iii)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iv)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에 한한다)
- v)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vi)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2) 기한연장의 신청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i)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ii)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iii)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기한연장의 승인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기한의 연장승인으로 변경된 기한 및 기한연장 승인 사유를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전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일시에 기한연장을 승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한 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및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2항의 규정(납기전 징수인 경우)에 의한 고지서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3. 서류의 송달

가. 서류의 송달 효력

국세의 부과·징수·환급등 국세에 관한 처분은 고지서 등의 서류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갑’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서류를 ‘을’세무서로 잘못 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송달장소를 잘못하였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부인된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78누284(79년 2월 27일)] :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납세자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나. 서류의 송달 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장소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 서류송달의 방법

원칙적으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여 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i) 주소 또는 거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ii)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iii) 문서등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II.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상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시기에 납세의무는 성립된다.

-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2)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때
 - i)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 ii)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iii)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 iv)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 v) 특소세, 주세, 교통세에 있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 판매장에서 판매, 과세장소에 입장, 유흥음식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vi) 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할 때
- vii)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viii)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ix)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등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가 있으며 신고납부세목에서는 정부는 결정하지는 않고 경정만 할 뿐이다.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에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농특세가 있다. 정부부과제도에서 과세표준신고의 의미는 납세자의 단순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는 확정되지만, 결정통지서(또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목에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있다.

3.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i)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 ii)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iii)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가.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발생여지가 원칙적으로 없어지므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됨이 없이 소멸되고 결손처분절차도 필요없다.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상속세등과 상호합의등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사 유 별	상속세·증여세	기 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	10년
○ 무신고	15년	7년
○ 허위신고·누락신고	15년	5년
○ 기 타	10년	5년

나.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i)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 ii) 계약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iii) 국외 소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iv)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다. 상호합의등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특례

이의신청등 불복절차에 의한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판결의 확정 또는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i)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한의 다음날
- ii)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iii)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iv)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v)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소멸시효의 기산일

- i) 신고납세로 확정된 세목의 시효의 기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며
- ii)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는 세목의 시효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 iii) 예외적으로 i)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천세액 등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ii)인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며, iii)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 i)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효력은 상실되고 중단사유 종료일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u>시효중단사유</u>	<u>새로운 진행시기</u>
- 납세고지	- 고지서상 납부기한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장상 납부기한
- 교부청구	- 교부청구기간 만료
- 압류	- 압류해제

- ii) 시효의 정지란 이미 진행한 시효에 이어 잔여기간만 진행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분납, 징수유예, 채납처분유예, 연부연납등이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국세와 가산금, 채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까지 소멸한다. 그리고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려면 납세의무는 기 확정된바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결손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Ⅲ.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으로 인한 승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합 병 (§23)	상 속 (§24)
승계시기	신설법인의 합병등기일	사망일, 실종선고기간만료일, 태아출생일
승계자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상속인(단독·공동·대습상속인), 수유자(사인증여 포함), 상속재산관리인
승 계 범 위 및 효력등	·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장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 납기연장, 물납, 담보제공 등은 있는 상태로 승계	· 피상속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단, 순자산가액 범위내에서 책임 · 피상속인 生前의 처분이나 절차는 당연승계 ·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에게 해야 함(예: 피상속인에게 독촉→상속인에게 납부독촉). 채납처분은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봄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 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된 모든 국세

* 상속인이 승계할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재산한도 이내이므로 부채총액과 상속세가 자산총액보다 클 경우 비록 사업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없음(국심 87부723)

2.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2인이상이 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간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가. 연대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범위

-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i) 분할되는 법인
 - ii)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iii)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i)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별로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의 예외)를 진다.
- ii) 자산소득 합산대상자와 주된소득자간 연대납세의무
- iii) 법인해산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분배를 받은 자. 단, 해산법인의 납부부족액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 iv)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
- v)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제2차 납세의무

가. 개 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

- (1)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해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점에서 부종성의 성질이 있다.
-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납부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므로 보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등

구 분	청산인등	출자자등	법 인	사업양수인
주된 납세자	법인	비상장법인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청산인 ○잔여재산분배받은 자	○무한책임사원 ○일정한 과점주주	법인 (상장법인 포함)	사업양수인
요 건	○법인의 해산 ○국세를 납부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비상장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국세의 납부기한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주된 납세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의 매각불능 및 양도제한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양수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제2차 납세의무 대상국세	○법인이 납부할 모든 국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있는 동안 성립한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	사업양수도일이전에 확정된 국세
제2차 납세의무한도	○청산인 : 분배한 재산가액 ○분배받은자 : 분배받은 재산(인적유한책임)	○무한책임사원(인적 무한책임) ○과점주주 (출자지분 한도)	(자산-부채)×지분율 (인적유한책임)	양수한 재산가액 (인적 유한책임)

※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함

- 제2차납세의무자 : 과점주주중 다음 1에 해당하는 자
 -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
 - 상기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 · 비속

4. 납세담보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납세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인적 · 물적담보를 말하며, 세법이 정하는 담보와 절차 등에 의해야만 담보로서 효력이 있다.

가. 납세담보의 종류

납세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있고, 물적담보에는 i)금전, 국채, 지방채, ii)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iii)납세보증보험증권, iv)토지, v)보험에 든 등기 · 등록된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등이 있다.

나. 담보의 제공사유

- (1) 납부 또는 징수기한의 연장
- (2) 징수유예
- (3)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전에 압류당한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4)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 (5)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 (6) 과세물품을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 (7)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보전상 필요시
- (8) 수출주류에 대한 면세등